

## 투자설명서 주요 변경사항

효력발생일 : 2017년 03월 28일

### ▶ 투자신탁명:

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A (주식-재간접형)  
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(주식-재간접형)  
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I (주식-재간접형)  
피델리티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CP (주식-재간접형)  
피델리티 스타만들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 
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  
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(주식)  
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(주식)  
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  
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  
피델리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 
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 
피델리티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 
피델리티 차이나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  
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  
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  
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  
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 
피델리티 월드 Big 4 40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혼합-재간접형)  
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 
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 
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A (주식-재간접형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재무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매매.평가이익 유보
- 환매수수료 면제
- 종류 W 가입자격 변경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A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문서 전반	환매수수료 면제	종류별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	<u>환매수수료 면제</u>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(업데이트) 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환매수수료 면제	-	<u>2017.03.00: 환매수수료 면제 (2017년 03월 28일부터 환매청구시 환매수수료 없음)</u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. 종류형 구조  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 (1) 수익증권의 매입	가입자격 변경	종류 W 가입자격: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(Wrap Account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인 경우, 법 제 105조 규정에 의한 신탁채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, 보험업법 제 108조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	종류 W 가입자격: 판매회사의 <u>일임형 계좌, 특정금전신탁</u> , 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신탁채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, 보험업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정보 업데이트	주요 투자 대상 외국 집합투자기구(피투자펀드)에 관한 사항, 관련 국가 현황 등	(업데이트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.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
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A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. 이익 배분  (1) 이익 등의 배분	매매·평가이익 유보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<b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b>  <b>※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</b>  <b>※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b>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	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
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A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(기재 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u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(기재 생략)</p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(주식-재간접형)  
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I(주식-재간접형)  
 피델리티 스타만들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재무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매매.평가이익 유보
- 환매수수료 면제
- 법령 개정 반영(수익자 공고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I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스타만들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문서 전반	환매수수료 면제	투자신탁별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	<u>환매수수료 면제</u>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(업데이트) 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환매수수료 면제	-	<u>2017.03.00: 환매수수료 면제 (2017년 03월 28일부터 환매청구시 환매수수료 없음)</u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정보 업데이트	주요 투자 대상 외국 집합투자기구(피투자펀드)에 관한 사항, 관련 국가 현황 등	(업데이트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. 이익 배분  (1) 이익 등의 배분	매매.평가이익 유보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</u> 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<u>경우에도</u>

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(주식-재간접형)  
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I (주식-재간접형)  
 피델리티 스타만들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분배를 유보합니다.  ※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  ※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		
3.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			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 의 공시에 관한 사항	법령 개정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
나. 수시공시			
(2) 수시공시			

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E (주식-재간접형)  
 피델리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I (주식-재간접형)  
 피델리티 스타만들기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 (기재 생략)	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u>다만, 아래                     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                    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                    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                     있습니다.</u>  (기재 생략)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CP (주식-재간접형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재무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매매.평가이익 유보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CP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(업데이트) 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정보 업데이트	주요 투자 대상 외국 집합투자기구(피투자펀드)에 관한 사항, 관련 국가 현황 등	(업데이트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. 이익 배분  (1) 이익 등의 배분	매매.평가이익 유보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<b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</b>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<b>경우에도</b> 분배를 유보합니다.  <b>※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</b>

피델리티 퇴직연금 글로벌 증권 자투자신탁 CP (주식-재간접형)
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<p>※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발생한 이익금 중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                    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                    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                    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    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                    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                    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                    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                    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                    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                   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                    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                    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                    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                    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		
3.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			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 의 공시에 관한 사항  나. 수시공시  (2)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                    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                    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                    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                     투자자에게 알리며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                    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                    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(기재 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                    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                    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                    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                    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                     투자자에게 알리며                     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                    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                     게시하여야 합니다. <b>다만, 아래                     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                    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                    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                    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                     있습니다.</b></p> <p>(기재 생략)</p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  
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(주식)  
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(주식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재무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환매수수료 면제
- 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(해지 등)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(주식)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문서 전반	환매수수료 면제	종류별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	<u>환매수수료 면제</u>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(업데이트) 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환매수수료 면제	-	<u>2017.03.00: 환매수수료 면제 (2017년 03월 28일부터 환매청구시 환매수수료 없음)</u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: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(주식)의 해지	구조도, 수익구조도 등	(업데이트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
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(주식)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 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(기재 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b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.</b></p> <p>(기재 생략)</p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재무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(헤지 등)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(업데이트) 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	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: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(주식)의 헤지	구조도, 수익구조도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. 종류형 구조	정보 업데이트	최초 설정일 등	(업데이트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 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
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3.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			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 의 공시에 관한 사항  나. 수시공시  (2)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(기재 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b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.</b></p> <p>(기재 생략)</p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재무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매매.평가이익 유보
- 종류 S-I 신설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관련 모투자신탁 변경 반영(투자한도, 중국본토주식 투자 관련 문구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문서전반	종류신설	=	<p><b>종류 S-I 신설</b></p> <p>[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]  <b>종류 S-I: BN124</b></p> <p>[가입자격]</p> <p>종류 S-I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[선취, 후취, 전환, 환매수수료] 없음</p> <p>[보수]</p> <p><b>종류 S-I 수익증권</b> 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<b>0.80%</b>  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<b>0.03%</b>  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<b>0.04%</b> 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<b>0.028%</b></p>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<p>(업데이트)</p> <p>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종류신설	-	<b>2017.03.00: 종류 S-I 신설</b>

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종류신설 정보 업데이트	구조도, 최초 설정일 등	(업데이트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 (2)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	법령 개정 반영	14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<u>자산총액의 10%</u>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.	14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<u>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</u>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.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 (2) 모투자신탁	법령 개정 반영	(가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)에 투자하는 행위. (...)  (기재 생략)	(가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, <u>사업의 수익권</u> 을 포함합니다)에 투자하는 행위. (...)  (기재 생략)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(2)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	중국본토주식 투자 관련 문구 수정	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  (기재 생략)  - 아시아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해 및/또는 심천 등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관련 주식을 포함함 주1)  (기재 생략)  주1) 해외위탁자산운용사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본토 관련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(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(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: QFII)) 등을 부여 받았으며, 이와 같은 QFII 제도 등을 통하여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(쿼터) 내에서 투자할 것임. 다만, QFII 제도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신탁 순자산	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  (기재 생략)  - 아시아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해 및/또는 심천 등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관련 주식을 포함함 주1)  (기재 생략)  주1) 해외위탁자산운용사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본토 관련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(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(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: QFII)) 등을 부여 받았으며, 이와 같은 QFII 제도 등을 통하여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(쿼터) 내에서 투자할 것임. 다만, QFII 제도를 통하여 <u>중국 본토관련주식</u> 시장에

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총액의 10%를 초과하지 아니함. 또한, 중국 본토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기 QFII 쿼터 외에도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단 (후강통 및 기타 적격한 수단 포함)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.	투자하는 경우, 그 비중은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10% 내외에서 관리됨. 또한, 중국 본토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기 QFII 쿼터 외에도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단 (후강통 및 기타 적격한 수단 포함)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.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정보 업데이트	관련 국가 현황 등	(업데이트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. 이익 배분  (1) 이익 등의 배분	매매·평가이익 유보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 ※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  ※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

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 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나. 수시공시  (2)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 (기재 생략)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b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.</b>  (기재 생략)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재무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매매.평가이익 유보
- 환매수수료 면제
- 종류 S-I 신설
- 종류 C-w 가입자격 변경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관련 모투자신탁 변경 반영(투자한도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문서전반	종류신설		<p><b>종류 S-I 신설</b></p> <p><u>[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]</u>  <b>종류 S-I: BN286</b></p> <p><u>[가입자격]</u></p> <p>종류 <b>S-I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결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</b></p> <p><u>[선취, 후취, 전환, 환매수수료]</u>  <b>없음</b></p> <p><u>[보수]</u></p> <p><b>종류 S-I 수익증권</b>  가. <b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0.10%</b>  나. <b>판매회사보수율 : 연 0.03%</b>  다. <b>신탁업자보수율 : 연 0.04%</b>  라. <b>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0.025%</b></p>
문서 전반	환매수수료 면제	종류별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에 따라 환매수수료 부과	<b>환매수수료 면제</b>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<p><b>(업데이트)</b></p> <p>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
피델리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환매수수료 면제 종류 신설	-	<b>2017.03.00:</b> - 환매수수료 면제 (2017년 03월 28일부터 환매청구시 환매수수료 없음) - 종류 S-I 신설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종류신설	구조도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(1) 수익증권의 매입	가입자격 변경	종류 C-w 가입자격: 판매회사의 <u>종합자산관리계좌(Wrap Account)</u> 및 <u>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</u> 인 경우, 법 제 105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, 보험업법 제 108조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	종류 C-w 가입자격: 판매회사의 <u>일임형 계좌, 특정금전신탁</u> , 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, 보험업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. 재간접형 구조	정보 업데이트	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등	(업데이트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(2)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	법령 개정 반영	5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<u>자산총액의 10% 이하</u> 가 되도록 합니다.	5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<u>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 이하</u> 가 되도록 합니다.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(2) 모투자신탁	법령 개정 반영	(가) 8.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(가) 8. <u>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</u>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	정보 업데이트	관련 국가 현황 등	(업데이트)

피델리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. 집합투자기 구 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. 이익 배분  (1) 이익 등의 배분	매매.평가이익 유보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<b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b>  <b>※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</b>  <b>※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b>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			

피델리티 재팬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현황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	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(기재 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b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.</b></p> <p>(기재 생략)</p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재무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매매.평가이익 유보
- 종류 C-w 가입자격 변경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관련 모투자신탁 변경 반영(투자한도, 중국본토주식 투자 관련 문구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(업데이트) 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. 종류형 구조  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 (1) 수익증권의 매입	가입자격 변경	종류 C-w 가입자격: 판매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(Wrap Account)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인 경우, 법 제 105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, 보험업법 제 108조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	종류 C-w 가입자격: 판매회사의 <u>일입형</u> 계좌, <u>특정금전신탁</u> , 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, 보험업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라. 재간접형 구조	정보 업데이트	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등	(업데이트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. 투자대상  (2)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	법령 개정 반영	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 00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	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 00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

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.	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.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(2) 모투자신탁	법령 개정 반영	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 (가) 8.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재팬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 (가) 8. <u>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</u>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(2) 모투자신탁	법령 개정 반영	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 (가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)에 투자하는 행위. (...)  (기재 생략)	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 (가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, <u>사업의 수익권을</u> 포함합니다)에 투자하는 행위. (...)  (기재 생략)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(2)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	중국본토주식 투자 관련 문구 수정	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  (기재 생략)  - 아시아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해 및/또는 심천 등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관련 주식을 포함함 주1)  (기재 생략)  주1) 해외위탁자산운용사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본토 관련 주식 시장에 투자할	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  (기재 생략)  - 아시아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해 및/또는 심천 등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관련 주식을 포함함 주1)  (기재 생략)  주1) 해외위탁자산운용사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본토 관련 주식 시장에 투자할

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수 있는 자격(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(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: QFII)) 등을 부여 받았으며, 이와 같은 QFII 제도 등을 통하여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(쿼터) 내에서 투자할 것임. 다만, QFII 제도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10%를 초과하지 아니함. 또한, 중국 본토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기 QFII 쿼터 외에도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단 (후강통 및 기타 적격한 수단 포함)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.	수 있는 자격(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(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: QFII)) 등을 부여 받았으며, 이와 같은 QFII 제도 등을 통하여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(쿼터) 내에서 투자할 것임. 다만, QFII 제도를 통하여 <b>중국 본토관련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, 그 비중은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10% 내외에서 관리될.</b> 또한, 중국 본토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기 QFII 쿼터 외에도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단 (후강통 및 기타 적격한 수단 포함)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.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정보 업데이트	관련 국가 현황 등	(업데이트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. 이익 배분  (1) 이익 등의 배분	매매.평가이익 유보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<b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b>  <b>※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</b>  <b>※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</b>

피델리티 월드 Big 4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<p>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 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나. 수시공시  (2)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(기재 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u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(기재 생략)</p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재무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매매.평가이익 유보
- 종류 S-I 신설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관련 모투자신탁 변경 반영(투자한도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문서전반	종류신설	=	<p><b>종류 S-I 신설</b></p> <p>[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] <b>종류 S-I: BN287</b></p> <p>[가입자격]</p> <p>종류 S-I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[선취, 후취, 전환, 환매수수료] 없음</p> <p>[보수]</p> <p><b>종류 S-I 수익증권</b>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<b>0.10%</b>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<b>0.03%</b>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<b>0.04%</b>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<b>0.025%</b></p>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<p>(업데이트)</p> <p>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
피델리티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종류 신설	-	<b>2017.03.00: 종류 S-I 신설</b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종류신설	구조도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. 재간접형 구조	정보 업데이트	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등	(업데이트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(2)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	법령 개정 반영	5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<u>자산총액의 10% 이하</u> 가 되도록 합니다.	5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<u>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 이하</u> 가 되도록 합니다.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(2) 모투자신탁	법령 개정 반영	(가) 8.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(가) 8. <b>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</b>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정보 업데이트	관련 국가 현황 등	(업데이트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 배분	매매.평가이익 유보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<b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</b>

피델리티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(1) 이익 등의 배분			<p>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 <p>※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</p> <p>※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	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

피델리티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(2) 수시공시		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 (기재 생략)	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u>다만, 아래</u> <u>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</u> <u>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</u> <u>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</u> <u>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</u> <u>있습니다.</u>  (기재 생략)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차이나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재무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매매.평가이익 유보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관련 모투자신탁 변경 반영(중국본토주식 투자 관련 문구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차이나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<b>(업데이트)</b> 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<b>(업데이트)</b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. 종류형 구조	정보 업데이트	최초 설정일 등	<b>(업데이트)</b>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(2)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	중국본토주식 투자 관련 문구 수정	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  (기재 생략)  - 중국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해 및/또는 심천 등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관련 주식을 포함함 <sup>주1)</sup>  (기재 생략)  주1) 해외위탁자산운용사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본토 관련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(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(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: QFII)) 등을 부여 받았으며, 이와 같은 QFII 제도 등을 통하여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(쿼터) 내에서 투자할 것임. 다만, QFII 제도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20%를 초과하지 아니함. 또한, 중국 본토 관련	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  (기재 생략)  - 중국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해 및/또는 심천 등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관련 주식을 포함함 <sup>주1)</sup>  (기재 생략)  주1) 해외위탁자산운용사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본토 관련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(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(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: QFII)) 등을 부여 받았으며, 이와 같은 QFII 제도 등을 통하여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(쿼터) 내에서 투자할 것임. 다만, QFII 제도를 통하여 <u>중국 본토관련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, 그 비중은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20%</u>

피델리티 차이나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기 QFII 쿼터 외에도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단 (후강통 및 기타 적격한 수단 포함)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.	<u>내외에서 관리됨.</u> 또한, 중국 본토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기 QFII 쿼터 외에도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단 (후강통 및 기타 적격한 수단 포함)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.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정보 업데이트	관련 국가 현황 등	(업데이트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. 이익 배분  (1) 이익 등의 배분	매매·평가이익 유보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  <u>※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</u>  <u>※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</u>

피델리티 차이나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 (기재 생략)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b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.</b>  (기재 생략)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재무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매매.평가이익 유보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 경 전	변 경 후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(업데이트) 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나. 종류형 구조	정보 업데이트	최초 설정일 등	(업데이트)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정보 업데이트	관련 국가 현황 등	(업데이트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. 이익 배분  (1) 이익 등의 배분	매매.평가이익 유보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<b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</b>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<b>경우에도</b> 분배를 유보합니다.  <b>※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</b>

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<p>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</p> <p>※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	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법령 개정 반영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(기재 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b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</b></p>
나. 수시공시			
(2) 수시공시			

피델리티 인디아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있습니다. (기재 생략)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재무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매매.평가이익 유보
- 종류 S-I 신설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관련 모투자신탁 변경 반영(투자한도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문서전반	종류신설	=	<p><b>종류 S-I 신설</b></p> <p>[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]  <b>종류 S-I: BN288</b></p> <p>[가입자격]</p> <p>종류 S-I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[선취, 후취, 전환, 환매수수료] 없음</p> <p>[보수]</p> <p><b>종류 S-I 수익증권</b>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<b>0.10%</b>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<b>0.03%</b>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<b>0.04%</b>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<b>0.025%</b></p>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<p>(업데이트)</p> <p>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
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종류 신설	-	<b>2017.03.00: 종류 S-I 신설</b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종류신설	구조도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. 재간접형 구조	정보 업데이트	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등	(업데이트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(2)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	법령 개정 반영	5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<u>자산총액의 10% 이하</u> 가 되도록 합니다.	5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<u>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 이하</u> 가 되도록 합니다.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(2) 모투자신탁	법령 개정 반영	(가) 8.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(가) 8. <b>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</b>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정보 업데이트	관련 국가 현황 등	(업데이트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 배분	매매.평가이익 유보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<b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</b>

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(1) 이익 등의 배분			<p>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 <p>※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</p> <p>※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		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

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(2) 수시공시		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 (기재 생략)	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u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.</u>  (기재 생략)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정보 업데이트 등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관련 모투자신탁 변경 반영(투자한도, 중국본토주식 투자 관련 문구 등)
- 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(종류 S-I 신설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(업데이트) 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: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)의 종류 S-I 신설	구조도 등	(업데이트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. 투자대상  (2)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	법령 개정 반영	14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.	14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.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. 투자제한  (2) 모투자신탁	법령 개정 반영	(가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)에 투자하는 행위. (...)  (기재 생략)	(가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, <u>사업의 수익권</u> 을 포함합니다)에 투자하는 행위. (...)  (기재 생략)
9. 집합투자기구	중국본토주식 투자 관련 문구 수정	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	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

피델리티 연금 아시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(2)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		(기재 생략)  - 아시아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해 및/또는 심천 등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관련 주식을 포함함(주1)  (기재 생략)  주1) 해외위탁자산운용사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본토 관련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(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(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: QFII)) 등을 부여 받았으며, 이와 같은 QFII 제도 등을 통하여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(쿼터) 내에서 투자할 것임. 다만, QFII 제도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10%를 초과하지 아니함. 또한, 중국 본토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기 QFII 쿼터 외에도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단 (후강통 및 기타 적격한 수단 포함)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.	(기재 생략)  - 아시아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해 및/또는 심천 등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관련 주식을 포함함(주1)  (기재 생략)  주1) 해외위탁자산운용사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본토 관련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(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(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: QFII)) 등을 부여 받았으며, 이와 같은 QFII 제도 등을 통하여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(쿼터) 내에서 투자할 것임. 다만, QFII 제도를 통하여 <b>중국 본토관련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, 그 비중은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10% 내외에서 관리될.</b> 또한, 중국 본토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기 QFII 쿼터 외에도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단 (후강통 및 기타 적격한 수단 포함)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.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나. 수시공시  (2)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 (기재 생략)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b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.</b>  (기재 생략)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정보 업데이트 등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관련 모투자신탁 변경 반영(투자한도 등)
- 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(종류 S-I 신설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(업데이트) 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: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의 종류 S-I 신설	구조도 등	(업데이트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(2)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	법령 개정 반영	5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.	5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.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 투자제한 (2) 모투자신탁	법령 개정 반영	(가) 8.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(가) 8. <b>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</b>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
피델리티 연금 미국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(기재 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b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.</b></p> <p>(기재 생략)</p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월드 Big 4 40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혼합-재간접형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정보 업데이트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관련 모투자신탁 변경 반영(투자한도, 중국본토주식 투자 관련 문구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월드 Big 4 40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혼합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(업데이트) 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. 투자대상  (2)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	법령 개정 반영	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채권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 00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.	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채권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 00) 금전차입 : 법 제8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(이하 “금전의 차입”이라 합니다) 다만,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.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. 투자제한  (2) 모투자신탁	법령 개정 반영	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채권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 (가) 8.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	피델리티 미국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피델리티 채권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  (가) 8. <b>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</b> 사모집합투자기구(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)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
피델리티 월드 Big 4 40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혼합-재간접형)
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나. 투자제한  (2) 모투자신탁	법령 개정 반영	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 (가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)에 투자하는 행위. (...)	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 (가) 2.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(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,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,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, 대출채권·예금·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, <b>사업의 수익권</b> 을 포함합니다)에 투자하는 행위. (...)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(2)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	중국본토주식 투자 관련 문구 수정	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  (기재 생략)  - 아시아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해 및/또는 심천 등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관련 주식을 포함함 <sup>주1)</sup>  (기재 생략)  주1) 해외위탁자산운용사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본토 관련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(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(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: QFII)) 등을 부여 받았으며, 이와 같은 QFII 제도 등을 통하여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(쿼터) 내에서 투자할 것임. 다만, QFII 제도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10%를 초과하지 아니함. 또한, 중국 본토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기 QFII 쿼터 외에도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단 (후강통 및 기타 적격한 수단 포함)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.	피델리티 아시아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.  (기재 생략)  - 아시아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해 및/또는 심천 등 중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관련 주식을 포함함 <sup>주1)</sup>  (기재 생략)  주1) 해외위탁자산운용사는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국 본토 관련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(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(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: QFII)) 등을 부여 받았으며, 이와 같은 QFII 제도 등을 통하여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한도(쿼터) 내에서 투자할 것임. 다만, QFII 제도를 통하여 <b>중국 본토관련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경우, 그 비중은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의 10% 내외에서 관리됨.</b> 또한, 중국 본토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는 상기 QFII 쿼터 외에도 현행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단 (후강통 및 기타 적격한 수단 포함)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.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기재 추가	-	※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

피델리티 월드 Big 4 40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혼합-재간접형)
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가. 이익 배분  (1) 이익 등의 배분			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나. 수시공시  (2)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 (기재 생략)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u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.</u>  (기재 생략)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투자신탁명:

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▶ 주요변경내용:

- 재무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매매.평가이익 유보
- 종류 S-I 신설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변경내용:

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문서전반	종류신설		<p><b>종류 S-I 신설</b></p> <p>[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] 종류 S-I: <b>BN289</b></p> <p>[가입자격]</p> <p>종류 <b>S-I</b>: <u>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</u></p> <p>[선취, 후취, 전환, 환매수수료] 없음</p> <p>[보수]</p> <p>종류 S-I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<b>0.10%</b></p> <p>나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<b>0.03%</b></p> <p>다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<b>0.04%</b></p> <p>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<b>0.025%</b></p>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<p>(업데이트)</p> <p>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
피델리티 차이나 퀴슈머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종류 신설	-	<b>2017.03.00: 종류 S-I 신설</b>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종류신설	구조도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재간접형 구조	정보 업데이트	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등	(업데이트)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정보 업데이트	관련 국가 현황 등	(업데이트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 배분 (1) 이익 등의 배분	매매.평가이익 유보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<b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b>  <b>※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</b>  <b>※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</b>

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			<p>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 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나. 수시공시  (2)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(기재 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u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(기재 생략)</p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재무정보, 위험등급 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매매.평가이익 유보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(관련 자투자신탁 정보 삭제 등)
- 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(종류 S-I 신설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(업데이트) 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관련 자투자신탁 변경 반영 : 피델리티 차이나 컨슈머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의 종류 S-I 신설	구조도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. 모자형 구조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	관련 자투자신탁 정보	(삭제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마. 재간접형 구조	정보 업데이트	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등	(업데이트)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정보 업데이트	관련 국가 현황 등	(업데이트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정보 업데이트	위험등급 산출을 위한 연환산 표준편차	(업데이트)

피델리티 차이나 킨슈머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라. 이 집합투자기 구에 적합 한 투자자 유형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. 집합투자기 구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14. 이익 배 분 및 과세 에 관한 사 항  가. 이익 배 분  (1) 이익 등의 배 분	매매·평가이익 유보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  ※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2017년 4월 1일 이후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  ※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14. 이익 배 분 및 과세 에 관한 사 항  가. 이익 배 분	기재 수정	이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)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	이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)로부터 5년간 지급을

피델리티 차이나 킨슈머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(2) 분배관련 유의사항  (나)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		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. <u>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</u>	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	
1. 재무정보 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 3. 집합투자기구 의 운용실적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 의 공시에 관한 사항  나. 수시공시  (2)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 (기재 생략)	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u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.</u>  (기재 생략)
3. 집합투자기구 의 공시에 관한 사항  나. 수시공시  (2) 수시공시	관련 법령 개정 반영	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	7.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<u>(단,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·게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)</u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▶ **투자신탁명:**

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▶ **주요변경내용:**

- 재무정보, 위험등급 정보 등 정보 업데이트
- 매매.평가이익 유보
- 법령 개정 반영 (수익자 공고 등)
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(관련 자투자신탁 정보 삭제 등)
- 기재 수정 등

▶ **변경내용:**

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	정보 업데이트	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	(업데이트)  *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현황 등	(업데이트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라. 모자형 구조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	관련 자투자신탁 정보	(삭제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마. 재간접형 구조	정보 업데이트	피투자펀드에 관한 사항 등	(업데이트)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정보 업데이트	관련 국가 현황 등	(업데이트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정보 업데이트	위험등급 산출을 위한 연환산 표준편차	(업데이트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나.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
**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**
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. 이익 배분  (1) 이익 등의 배분	매매·평가이익 유보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	이익배분: (...)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<b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</b> 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<b>경우에도</b> 분배를 유보합니다.  ※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의 유보는 <b>2017년 4월 1일 이후</b>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  ※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. 이익 배분  (2) 분배관련 유의사항  (나)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	기재 수정	이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관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)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. <u>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관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관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</u>	이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(관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)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.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관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관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.
<p align="center">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</p>			

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재형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			
항 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정보 업데이트	정보 전반	(업데이트)
<b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정보 업데이트	운용자산 규모 등	(업데이트)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법령 개정 반영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</p> <p>(기재 생략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,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,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. <b>다만, 아래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그 사항이 발생하는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습니다.</b></p> <p>(기재 생략)</p>

※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